

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1월 13일 김승동위원외 10인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(2009. 12. 17)
상정 및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위원회 김승동의원)

□ 제안이유

- 가. 관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.
- 나. 특히,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.
- 다. 이에 따라 특별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광고물에 대한 단속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뜻을 정함. (안 제2조)
- 나.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상시단속 의무규정을 정하고 특별단속 구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)
- 다.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단속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하여 위반 광고주 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)
- 라. 단속대상 청소년유해광고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. (안 제5조부터 제9조)
- 마. 위반 광고주에 대해서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규정한 조치 이외에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적 혜택을 제한 할 수도 있도록 함. (안 제10조)

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문	답 변
○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?	○유해광고물의 판단기준이 없거나 처분이 기준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.
○청소년유해광고물만 집중단속하면 나머지 광고물의 단속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?	○불법광고물 단속이 않되고 있으니 우선적으로 청소년 유해광고물만이라도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중요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3호의 청소년의 보호·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
2.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
3. 그 밖에 제5조의 청소년유해광고물심의위원회가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

제3조(단속) ① 시장은 제2조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하여 상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통행과 출입이 빈번한 지역을 “특별단속구역”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단속내용의 공개) ① 시장은 매분기별로 제3조의 단속 내용과 그 조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위반 광고주 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단속내용공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5조(심의위원회) 광고물이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부천시청소년유해광고물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아래의 사람을 포함한다.

1. 광고물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
2.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
3.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자
4. 기타 청소년유해광고물을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이 풍부한 사람

② 위원장은 광고물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.

제7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의 경우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회의를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9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

수 있다.

제10조(벌칙 등) ① 이 조례를 위반한 광고주에게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과는 별도로 시장은 위반 광고주 등에 대하여 시가 제공하는 행정적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

의안번호	제538호
의결년월일	2009. 12. 23. (제157회)

발의년월일 : 2009. 11. 23.

발 의 자 : 김승동의원등10인

1. 제안이유

- 가. 관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불법 광고물이 범람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.
- 나. 특히,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3호에서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.
- 다. 이에 따라 특별히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광고물에 대한 단속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뜻을 정함. (안 제2조)
- 나.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상시단속 의무규정을 정하고 특별단속 구역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)
- 다.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단속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하여 위반 광고주 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4조)

- 라. 단속대상 청소년유해광고물의 범위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. (안 제5조부터 제9조)
- 마. 위반 광고주에 대해서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규정한 조치 이외에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적 혜택을 제한 할 수도 있도록 함. (안 제10조)

□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발췌 사항 1부.
- 나. 기타 참고자료 1부.

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5조제2항제3호의 청소년의 보호·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시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
2.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
3. 그 밖에 제5조의 청소년유해광고물심의위원회가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

제3조(단속) ① 시장은 제2조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하여 상시 단속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통행과 출입이 빈번한 지역을 “특별단속구역”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단속내용의 공개) ① 시장은 매분기별로 제3조의 단속 내용과 그 조치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위반 광고주 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단속내용공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제5조(심의위원회) 광고물이 제2조의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부천시청소년유해광고물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아래의 사람을 포함한다.

1. 광고물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
2. 청소년 업무 담당과장
3. 경기도부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자
4. 기타 청소년유해광고물을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이 풍부한 사람

② 위원장은 광고물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.

제7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의 경우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회의를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9조(수당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

수 있다.

제10조(벌칙 등) ① 이 조례를 위반한 광고주에게는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과는 별도로 시장은 위반 광고주 등에 대하여 시가 제공하는 행정적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관계 법령 발췌서

○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

제5조 (금지광고물등)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등

2.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

②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3.5.29, 2007.12.21>

1.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

2.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

3. 청소년의 보호·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

4. 내국인용 카지노·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

5.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

6.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

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

찬성 의원 서명부

의원명	서명	비고	의원명	서명	비고
김승룡					
주수종					
한승근					
유노백					
신석환					
김민재					
김민재					
이환라					
노미연					
김영근					